2015년 3차 경찰채용 필기시험 - 김승봉 형사소송법 기출 해설 -

- 1.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 - ①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.
 - ①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 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.
 - ©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 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.
 - ②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 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,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이 된다.
 - 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, 병합심리의 필 요가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.
- ① 1개

- ② 2개 ③ 3개 ④ 4개

정답: ②

해설: 🗅 🗇 이 옳지 않다.

- ⓒ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(대판 1997.12.12, 97도2463).
- ⑪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<u>법원은 결정으로</u>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<u>이송할 수 있다(</u>제7조)
- ① 제2조
- ① 제8조 제2항
- 리 대판 2006.12.5,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
- 2. 「형사소송법」상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것은?
- ① 관할이전의 신청(제15조)
- ② 압수·수색영장의 집행 참여(제121조)
- ③ 증거보전의 청구(제184조 제1항)
- ④ 공소장 변경 요구(제298조 제2항)

정답: ④ 공소장변경요구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.

- 3. 甲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, 사실은 甲이 검사에게 乙의 성명, 생년월일,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칭하였고, 이에 검사는 乙의 이름으로 공소제기 하였다. 이 경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공소장에 피모용자 乙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 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甲이 피고인이 되고 乙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.
- ②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

아야 하는 것인 바,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 이 아니므로,「형사소송법」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
- ③ 위 ①②에 있어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 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乙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어 공소제기의 방식이 「형사소송법」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.
- ④ 만일 피모용자 乙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乙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 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乙에게 적법한 공소 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「형사소송법」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乙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시킬 필요는 없다.

정답: ④

해설: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「형사소송법」 제 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 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(대판 1997.11.28, 97도2215)).

- 4. 「형사소송법」상 열람·등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 다.
- ②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③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 (이하 "서류 등"이라 한다) 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의 열람·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다만, 위 ③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서면의 교부만을 신청할 수 있다.

정답: ④

해설: ④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(제266조의3 제1항).

- ① 제35조 제1항
- ② 제294조의4 제1항
- ③ 제266조의3 제1항
- 5. 「형사소송법」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-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.

- ②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반드시 작성 첨부하여 긴급 체포서 작성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, 건조물, 항공기,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.
- ④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·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있으며,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·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압수·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정답: ③ 제216조 제1항 제1호

-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, 체포의 이유와 변 호인을 선임함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(제200조의5).
- ②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제200조의3 제2항)
- ④ 체포한 때붙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(제217조의2 제2항)
- 6. 체포·구속·압수·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 에 관하여 다시 긴급체포를 할 수 없으나,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한 경우라면 긴 급체포의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동일한 범죄사실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다.
- ② 수사기관이 압수·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,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.
-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·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.
-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 도된 경우라면,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부터가 아 니라 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.

정답: ③

해설: ③ 규칙 제100조 제1항

- ①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(제200조의4 제2항.제3항).
- ②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(대판 2009.3.12, 2008도763)
-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,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(대판 2011.12.22, 2011도12927).
- 7. 체포·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·구속적부심사

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체포·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,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 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,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때,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.
- ③ 체포·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④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, 법원 또는 검사가 지 정하는 일시·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.

정답: ②

해설: ② 체포.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(제214조의3 제1 항).

- ① 제214조의2 제1항
- ③ 규칙 제106조
- ④ 제214조의2 제5항.6항
- 8. 압수·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- ① 검사가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공장부지, 건물,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,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 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.
 - ①「형사소송법」은 제215조에서 검사가 압수·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 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.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 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「형사소송법」제215조에 의하여 압수·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 아야 하며,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「형사소송법」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 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·수색을 하였다면. 그와 같 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.
 - ©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, 이는 (구)「형사소송법」제217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가 아니므로,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

없음

② 1개

③ 2 개

④ 3 개

정답: ②

해설: ⓒ이 옳지 않다.

ㄸ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

람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경우, 이를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(대판 2008.7.10, 2008도2245).

- 대결 2004.3.23, 2003모126
- 다판 2011.4.28, 2009도10412
- 9. 구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(O)과 옳지 않은 것(X)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? (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 - ①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 우,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다. 그렇지만 이와 함께「형사소송법」제202조,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동법 제200조.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 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까지 예정하 고 있지는 않다.
 - ©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 절차는 어디까지나 「형사소송법」제199조 제1항 본문,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.
 - © 구속된 피의자도「헌법」제12조 제2항과「형사소송법」제244조의 3에 따라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, 수사기관은 피의 자를 신문하기 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.
 - ②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이는 출석 불응에 해당하므로, 수사기관은 「형사소송법」제200조의2(영 장체포)에 따라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.

 - 4 7(X), 1(0), 2(0), 3(X)

정답: ④

해설: ①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,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에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다. 이와 함께「형사소송법」제202조, 제203조에서 정하는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 기관이 동법 제200조, 제241조 내지 제244조의5에 규정된 피의자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(대판 2013.7.1.. 2013모160)

- ©© 대판 2013.7.1., 2013모160
- €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.(대판 2013.7.1, 2013모160)
- 10.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「상표법」위반의 공소사실을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위반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, 직권으로 위「부정경쟁방지 및

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|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.

- ② 공소장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예비・ 음모죄로 인정할 수 없다.
-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소 장변경 신청을 하였을 경우,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해도 공소사 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,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.

정답: ③

해설: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는 공 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,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 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 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,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(대판 2010.6.24,

2009도9593)

- ① 대판 2011.1.13, 2010도5994
- ② 대판 1996.12.6, 96도2461
- ④ 대판 2004.7.22, 2003도8153
- 11.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검사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.
- ② 검사, 피고인,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 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·수색·검증은 물론 증 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④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정답:①

해설: 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(제184조 제3항).

- ② 제184조 제1항
- ③ 대판 1979.6.12, 79도792
- ④ 제184조 제2항
- 12.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
- ① 법령상 생산·제조·소지·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.
- ©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 를 상실하면,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 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.
- ©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「형사소송법」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.
- 즪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 은 경우,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២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 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.

① 1개

② 2개

③ 3개

4 개

정답: ③

해설: 🗇 🗅 🖸 이 옳지 않다.

- □ 법령상 생산.제조.소지.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 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(제130조 제3항).
- ©C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,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「형사소송법」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,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(대결 1996.8.16, 94모51 전원합 의체).
- ⓒ 대판 2000.12.22, 2000다27725
- 回 대결 1997.1.9, 96모34
- 13.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·청소년이 성년 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.
- ②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강간·강제추행의 죄는 디엔에이(DNA)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.
- ③ 2015년에 개정된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르면, 사람을 살해한 범죄(종범을 포함한다) 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「형사소송법」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 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- ④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. 이때 뇌물공여죄

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정답: ③

해설: ③ 2015년에 개정된「형사소송법」에 따르면, 사람을 살해한 범죄(종범은 제외한다) 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「형사소송법」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 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(제253조의2). 이때 위 개정내용은 개정「형사소송법」부칙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.

- ①② 아청법 제20조 제1항.제2항
- ④ 대판 2015.2.12. 2012도4942

14.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법원은 범죄의 성질, 증인의 연령, 피고인과의 관계,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 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.
- 다 위 ①과 같이 차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검사, 변호인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방청인에 대 하여까지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는 없다.
- ⓒ 피고인 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이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그 한도에서 반대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,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 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 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.

① 없음

② 1개

③ 2개

④ 3개

정답: ②

해설: ①이 옳지 않다.

- ©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, 변 호인, 방청인 등에 대하여도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, 이 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9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시설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(대판 2015.5.28, 2014도18006)
- ① 제165조의2
- ⓒ 대판 2015.5.28, 2014도18006
- 15. 「형사소송법」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 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 드에 입력한 경우,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

-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
-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
- ④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 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 등본

정답: ②

해설: ②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(대판 1976.10.12, 76도 2960).

- ① 대판 2007.7.26, 2007도3219
- ③ 대판 1982.9.14, 82도1504
- ④ 대판 1985.4.9, 85도225
- 16.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 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, 그와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 아 작성된 녹취록은「형사소송법」제308조의 2 에서 정하는 '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 고 수집한 증거'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.
- ②「형사소송법」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,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 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(증인신문조서)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'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'고 진술하였다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.
-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 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 바,'그 내용을 인정할 때'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④ 사법경찰관이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그 압수물은 영장주의 위반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, 압수물 을 찍은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당사자주의 및 실체적 진실주의에 비추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
정답: ④

해설: ④

- ④ 「형사소송법」제2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 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, 그 '압수물'및 '압수물을 찍은 사진'은 피고인이나 변호 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(대판 2010.1.28, 2009도10092).
- ① 대판 2014.1.16, 2013도5441
- ② 대판 2010.1.14, 2009도9344

- ③ 대판 2010.1.14. 2009도9344
- 17.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)
- ① 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은 재판장의 공판기일에서의 최초 설명의무를 규 정하고 있는데, 원칙적으로 그 설명의 대상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하여 낭독하지 아니 한 공소사실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.
- ②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 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.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,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.
- ③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.

정답: ②

해설: ②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 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.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,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(국참법 제 6조 제1항,4항)

- ① 대판 2014.11.13. 2014도8377
- ③ 국참법 제9조 제1항,제3항
- ④ 국참법 제17조 제4호
- 18.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자백배제법칙(「형사소송법」제309조)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 이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.
-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「형사소송법」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 는 필요하지 않다.
- ③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 전에 부여하여야 한다.
-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 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

정답: ③

해설: ③ 대판 2005 8 19, 2005 도 2617

- ① 임의성 없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②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 음은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
-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,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(대판 2005.8.19, 2005도2617).
- 19.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 지방법원, 지원 또는 시·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 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.
-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 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 령할 수 있다. 다만,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.
- ③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.
-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, 주문, 범죄 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・날인하여야 한다.

정답: ②

해설: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 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 을 명령할 수 있다. 다만,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(즉심법 제17조 제1항)

- ① 즉심법 제2조
- ③ 즉심법 제8조의2 제1항
- ④ 즉심법 제12조 제1항
- 20. 「형사소송법」제450조에 대한 내용이다. ()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()하여야 한다.

- ①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
- ② 무죄판결을 선고
- ③ 결정으로 약식명령청구를 기각
- ④ 검사에게 공소장의 보정을 요구

정답: ①

해설: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(제450 조)